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기출문제 (4.28.~4.29.)

행정법

[문 1]

甲은 최근에 급증하는 반려동물 장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동물화장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A시 근교의 토지 지상에 동물화장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A시 시장에게 2021. 2. 15.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A시 시장이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있던 중 A시 의회는 2021. 4. 15. A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개정조례의 부칙은 위 조례를 공포한 날에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甲의 동물화장시설 설치예정지는 위 개정조례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A시 시장은 위 개정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 5. 15. 원고의 동물화장시설 신축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1. 甲의 동물화장시설 설치예정지로부터 200

미터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乙이 A시 시장의 동물화장시설 신축 허가처분을 다들 원고적격이 있는가? 乙이 甲의 동물화장시설 설치예정지로부터 300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와 나누어 검토하시오. (10점)

2. 乙이 제기한 동물화장시설 신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동물화장시설 신축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乙의 주장의 인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3. 위 소송 계속 중 甲이 A시장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처분에 따라 건물이 모두 완공되었을 경우 乙의 청구의 인용 가능성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원고의 계속된 건축에 대하여 乙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검토하시오. (20점)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 분야	허가 기준
가. 공통 분야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 (나) 삭제 <2016. 6. 30.>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정,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 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21. 4. 15. 조례 제○○○호로 개정된 A시의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 4. 15.]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 (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화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1.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내 경계 또는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부 칙 <2021. 4. 15. 조례 제○○○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 2】

1. 행정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토지수용과 관련한 소송 중 보상금증액소송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민 법

【문 1】

1. 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X 주식회사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007. 1. 10.乙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 12.乙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X 주식회사가 2007. 2. 28.에 중도금으로 6,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 잔

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乙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2007. 7. 20. 사업계획승인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X 주식회사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乙은 2012. 2. 10.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甲은 X 주식회사에 대하여甲에게 약정금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8. 2. 확정되었다.甲은 2017. 1. 5.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X 주식회사를 채무자,乙을 제3채무자로 하여乙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X 주식회사가乙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금 3,000만 원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7. 2. 11.乙에게 송달되었다.

乙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甲의 청구는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는 내용의 항변을 하였다.

甲의 위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용/기각/일부인용) 및 이유에 관하여 논하시오(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논하지 아니함). (20점)

2.甲은 A자동차 제조 주식회사(이하 ‘A자동차’라 한다)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乙은 A자동차와 촉매정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A자동차의 지시에 따라 乙에게 촉매제 합계 346,096개를 인도하였고, 乙은 甲으로부터 인도받은 촉매제를 사용하여 촉매정화장치를 제조한 다음 A자동차에 촉매정화장치를 납품하고 잔여 촉매제 합계 19,268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甲은 A자동차로부터 합계 326,828개의 촉매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다.

甲은 乙을 상대로 잔여 촉매제 19,268개의 인도 또는 위 촉매제가 멸실되었을 경우 촉매제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이 사건 잔여 촉매제에 대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촉매제 인도시점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5년 이전에 인도받은 촉매제에 대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촉매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乙의 위 항변에 관한 당부 및 이유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3. 甲과 乙은 2023. 4. 1. 乙이 甲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甲이 이에 따라 그 부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乙의 숙모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담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부담부증여계약 체결 당시 乙의 증여의사가 서면에 의하여 표시되지는 않았고 乙이 증여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나, 甲은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을 모두 이행하였다. 그 후 甲은 2023. 4. 24. 乙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부담부증여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임의로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乙은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하므로 甲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용/기각/일부인용 등) 및 이유를 논하시오. (20점)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1985. 1. 1. 부터 乙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 관련성 없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가. (위 기본적 사실에 추가하여) 甲은 2010. 1. 1.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다. X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2019. 1. 1. 丙이 乙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구제수단 및 그 근거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

- 나. (위 기본적 사실에 추가하여) 乙은 2008. 5. 1. A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A 앞으로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甲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A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A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 甲은 대위변제

하였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결론 및 근거에 대해 논하시오. (10점)

다. (위 기본적 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甲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6. 1. X토지를 B에게 증여한 경우 甲이 乙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구제수단 및 그 근거에 대해 논하시오. (10점)

〈위 기본적 사실관계와 달리〉

라. A는 X토지의 소유자 B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2000. 1. 1. X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甲중중은 2001. 1. 1. A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후 종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2. 1. 1. 乙을 포함한 甲중중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명의신탁을 하였다. 乙을 포함한 甲중중원들은 위 X토지에 선대의 분묘들을 이장설치하고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였으며 매년 시제를 지내왔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는 2017. 1. 1. 위 확정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원판결을 취소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2019. 1. 1. 甲중중 및 乙을 포함한 甲중중원들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 (1) 乙을 포함한 甲중중원들이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을 할 수 있는지 그 결론 및 이유를 설명하시오. (5점)
- (2) 甲중중이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을 할 수 있

는지 그 결론 및 이유를 설명하시오. (5점)

〈위 기본적 사실관계와 달리〉

마. 甲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X공장과 그 공장 내의 Y기계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었는데, 어음부도가 나자 도피하였다. B는 Y기계와 같은 종류의 기계를 판매하는 상인이었는데, 甲의 부도 소식을 들은 후, X공장 종업원 A에게는 Y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Y기계를 나에게 헐값에 팔아라”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A는 甲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Y기계를 몰래 반출하여 B에게 매도하였다. B는 자신이 매수한 Y기계를 기계 도매상인 乙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이 당시 乙은 Y기계가 야적장에서 관리인도 없이 비를 맞지 않는 정도로만 관리되고 있는 채로 인도받았고, B가 세금계산서를 주지도 않았으므로, Y기계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물건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 이 경우 甲과 乙간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10점)

민사소송법

【문 1】

※ 각 설문 답안작성 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2007. 6. 10. 乙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07. 9.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丙은 甲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1〉

乙은 2018. 5. 7. 丙을 상대로 위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절차에서 2018. 9. 3. 변론종결 후 같은 달 17. 乙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乙과 丙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甲과 丙은 2022. 8. 24. 乙을 상대로 차용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소송’) 이 사건 소송 제1심에서 甲과 丙은 乙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乙은 이 사건 소송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甲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이 사건 소송 제1심법원은 이후 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丙이 항소하였다. 丙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전소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丙이 “乙의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에 따른 丙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2. 丙이 “이 사건 소송 제1심에서 乙이 주채무자인 甲의 청구를 인낙하였기 때문에 丙의 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에 따른 丙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추가적 사실관계 2〉

乙은 변제기가 도과하여도 甲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07. 10. 1. 甲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甲은 2007. 10. 3. 치료를 받고 병원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였다. 乙은 2007. 11. 1. 甲을 상대로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소송’). 甲은 선행소송 제1심에서 “乙의 폭행으로 100만 원의 재산상 손해(치료비)가 발생하였다”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의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상계항변)를 하였다. (3. 설문과 4. 설문은 상호관련 없음)

3. 선행소송 제1심법원은 2008. 3. 20. 甲의 상계항변을 배척하고 乙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甲은 위 판결에 항소하는 한편 2008. 4. 1. 乙을 상대로 위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다. 甲은 별소 제기 이후인 2008. 5. 1. 선행소송 항소심에서 위 상계항변을 철회하였다. 이 경우 甲의 별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4. 甲은 선행소송 제1심 도중 상계항변을 철회하였고, 선행소송 제1심법원은 乙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후 甲은 위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다. 甲의 상계권 행사와 관련하여 별소 본안판단에서 甲의 청구 인용 가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문 2】

다음 각 설문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1. 자백간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2.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이 불법행위의 가해자와 그 손해를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제기된 것이었다. 그런데 乙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甲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때 위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변론주의와 석명권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25점)

형 법

【문 1】

1. 가. 甲은 A의 소유로 대지화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점유하던 중 A의 토지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였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
- 나. 甲은 위와 같이 신축한 빌라 건물의 소유자이고, B는 甲의 허락을 받아 그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甲과 B 사이에 다툼이 생겨 甲이 B에게 퇴거를 요청하였는데, B가 이를 거부하자 甲은 B를 내쫓을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인 C에게 그 빌라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빌라 신축 당시 甲에 의해 설치된 것임)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C는 B가 현관문을 열어 둔 채 잠시 외출한 틈을 타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현관문을 닫아 두어 외출 후 돌아온 B가 빌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디지털 도어락 손괴로 인한 권리행사방해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

하여 논하시오. (10점)

2. 甲은 A와 교제를 하다가 7개월 전에 헤어졌다. 그런데 甲은 A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정 무렵 A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 그 지하 주차장에 있는 동으로 연결되는 출입구의 공동출입문에 A와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구를 열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A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甲은 A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A가 “누구냐?”라고 묻자 곧바로 도주하였다. 그 후 甲은 A의 아들인 B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B와 접견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A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은 다음 이러한 목적을 숨긴 채 구치소를 찾아가 정문을 통과하여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甲은 구치소 민원실에서 B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신청을 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으로부터 접견허가를 받은 후 반입이 금지된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 녹화 장치를 소지하고 접견실로 들어가 B를 접견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하였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30점)

【문 2】

甲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고른 다음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 앞으로 갔는데 甲보다 먼저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던 A가 실수로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A는 지갑이 바닥에 떨어진 것도 모른 채 편의점을 떠났고, 편의점 주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A의 지갑을 습득하여 甲에게 “이 지갑이 당신 것

이나?”라고 물었다. 甲은 그 지갑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내 것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편의점 주인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甲은 다음 날 B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를 찾아가 ‘2주 동안 차량을 사용하고 임대료로 7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A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위 지갑에 들어 있던 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B로부터 렌터카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그 후 甲이 렌트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자, B가 甲에게 위 렌터카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甲은 그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연락두절이 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B는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위 렌터카를 우연히 발견하여 회수하였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50점)

형사소송법

【문 1】

- (1) 甲은 과거 당근나라 사이트에 거짓으로 중고유모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방식의 사기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2) [사기 ①] 甲은 2022. 2. 7.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2. 6. 10.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2. 10. 11. 항소가 기각되고, 같은 달 14.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사기 ②] 甲은 2022. 9. 20. 당근나라 사이트에 ‘수투케 디럭스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A에게 ‘1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유모차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A는 같은 날 甲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유모차는 받지 못하였다. 화가 난 A가 甲에게 ‘1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겁이 난 甲은 A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조만간 형편이 나아지면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A는 만약을 대비하여 해당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두었다.

(4) [사기 ③] 甲은 2022. 10. 13. 당근나라 사이트에 ‘수투케 휴대용 유모차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이후 甲은 [사기 ③] 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제1심 재판 계속 중이었는데, A는 甲과 연락이 되지 않자 甲을 [사기 ②] 사실로 고소하였고, 위 (3)의 녹음물도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에 검사는 [사기 ②] 사실에 대하여 甲을 상습사기로 추가 기소하였고,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심리하게 되었다.

1. 甲이 [사기 ②] 사실을 부인하자 검사는 A가 제출한 위 녹음물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甲이 위 녹음물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 위 녹음물 중 甲의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논하시오. (15점)

2. 담당 재판부는 [사기 ①, ②, ③] 사실을 포괄하여 甲에게 사기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상습사기에 대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가. 검사의 추가 기소에 대한 법적 판단과 이에 대한 법원의 조치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 나. [사기 ②, ③] 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15점)

【문 2】

甲과 乙은 2022. 1. 하순 무렵 당시 A가 머물고 있던 X모텔에서, A가 乙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A의 팔과 다리를 위협한 물건인 담뱃볼로 지지는 등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甲과 乙은 혐의사실을 부인하였고, 특히 甲은 A를 알지 못하고 2022. 1. 하순 무렵 X모텔 근처에 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A는 경찰 및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甲과 乙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폭행의 일시, 수단 및 방법,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는 진술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乙은 수사기관 조사 이후 도주하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고, 이에 검사는 우선 甲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였다.

제1회 공판기일에 甲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여 검사는 A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제2회 공판기일에 A가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재판장은 A가 甲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甲의 퇴정을 명한 후 A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다. 위 각 진술 조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인정 및 A에 대한 검사의 주신문이 마쳐진 후 甲의 변호인이 준비하여 온 반대신문사항 55문항 중 27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에 이른 경위에 관한 부분)까지는 A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졌으나, 시간 관계상 甲측의 나머지 반대신문(폭행의 일시, 수단 및 방법, 상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한 부분)은 제4회 공판기일에 하기로 하였다. 한편, 甲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입정하였으나 A 진술의 요지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 제3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제2회 공판심리 관련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고, 甲 및 변호인은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A는 제4회 공판기일 전에 甲의 보복이 두렵다는 취지의 증인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A의 종전 주소지로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는 한편, A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소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5회 공판기일에 판사가 바뀌어 공판절차를 갱신하였고, 재판장이 甲 및 변호인에게 갱신 전의 각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중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알리고 이의 유무를 물으니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A 주소의 보정을 명하고 보정된 주소지로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었으나, A는 병환중이라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시 증인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증인 재소환을 위하여 변론이 속행되었다. 재판장은 A에 대한 구인 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위 주소지에 대하여 A의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관할 경찰서 경위는 A가 위 주소지에서 1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A의 주소지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의 결과보고를 하였고, A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결번으로 소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 甲은 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A의 진술과 ②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작성 참고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려 한다. 甲의 입장에서 논거를 서술하시오(설문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절차적 요건은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볼 것). (30점)
2. 한편 도주 중이던 乙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B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과거 내연관계를 너의 남편에게 알려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B는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乙에 대한 공갈혐의 수사과정에서 2022. 1. 25. B가 자신의 승용차로 乙을 X모텔 근처에서 내려 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차량 블랙박스에는 같은 날 乙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와 함께 X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B는 ③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파일과 ④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CD에 저장하여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 이후 乙은 검거되어 특수상해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고, 乙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부인하자 검사는 위

CD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乙은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위 ③, ④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상 법

【문 1】

다음 각 설문에 답하시오(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A주식회사는 2020. 1. 2.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정관에는 1인 이상의 대표이사와 3인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0. 1. 2. 甲이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로, 乙, 丙이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이후 2020. 6. 14. 丁이 추가로 A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2023. 2. 3. 丁은 甲, 乙, 丙이 임기만으로 인하여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서 모두 퇴임하였다는 취지의 등기를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였고, 법원은 丁이 이사 퇴임의 등기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위 과태료 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 (10점)
2. (제1문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만약 A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정수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결론이 달라지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7점)
3. 제1문 또는 제2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면, 丁이 과태료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는 甲, 乙, 丙에 대한 퇴임등기를 상법상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

오(신청기간 만료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 (3점)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입시학원 강사인 甲은 2016. 4. 1. 서울 동작구에서 상가건물의 점포를 임차하여 ‘A학원’을 개업하였고, 그 무렵부터 해당 점포에서 학원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으며 입시학원 강의를 하여 왔다. 甲은 A학원의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인 乙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乙은 2016. 3. 30. 甲에게 변제기를 1년후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 甲은 한편 2017. 4. 2. 가 전제품 판매업자인 丙으로부터 A학원에서 사용할 정수기를 외상으로 구매하면서 대금은 3개월 후 변제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직원인 丁이 외상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상을 전제로 다음 각 설문에 답하시오(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후 甲은 건강 문제로 2021. 1. 2. 丁과의 사이에 A학원에 관한 경영위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丁은 A학원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해당 점포에서 학원 영업을 계속하였고, 운영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하면서 甲에게는 월 500만 원의 임차료만을 지급하였다. 乙은 2021. 12. 5. 丁이 甲의 영업을 양수

하였음을 이유로 甲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8점)

2. (제1문의 사안을 전제로) 丁이 변제 요구에 응하지 않자, 乙은 뒤늦게 2022. 6. 4.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甲은 해당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3. (제1, 2문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이다) 甲이 3개월 후에도 정수기 판매대금을 결제하지 않자 丙은 甲을 상대로 2017. 10. 1.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7. 10.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甲이 학원 영업 부진을 이유로 정수기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丙은 2022. 12. 4. 丁에게 정수기 판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丁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丁의 주장이 타당한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8점)

4. (제3문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만약 丁이 2017. 4. 2.가 아니라 2017. 10. 21.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있는지도 아울러 설명하시오. (4점)

【문 3】

비상장회사인 A 주식회사는 영업년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이고, 甲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전체 주식의 60%인 6,000

주를 보유한 주주이며, 乙은 A 주식회사의 주식 40%인 4,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이를 전제로 아래의 각 문항에 답하라(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각 문항은 상호독립적이다.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

1. A 주식회사는 2015. 8.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으로서 1주당 5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이하 '1차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직후 乙이 배당액이 과소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A 주식회사는 2015. 9. 30. 다시 1주당 1,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이하 '2차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가. 위 사실관계에서 배당가능이익 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乙이 A 주식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중간배당액은 얼마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15점)

나. 위 사실관계에서 사실 배당가능이익이 없었음에도 2015. 10. 31. 乙에게 중간배당금이 지급되었다면, A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2023. 4. 1. 그 중간배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를 설명하라. (15점)

다. 위 사실관계에서 사실 배당가능이익이 없었음에도 회계담당 임원 丙이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것처럼 꾸민 사실이 드러나, A 주식회사는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丙은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甲이 지시한 것이므로 A주식회사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고 주장한다. 丙의 주장의 당부를 논하라. (10점)

2. 甲은 A주식회사의 신규 사업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친 후, 2022. 1. 1. 丁에게 이익배당 우선주(이하 '이 사건 우선주'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의 종류 : 이익 배당 우선주
- 발행주식 우선주의 수 : 총 10,000주
- 배당의 조건 :
 - ① 이 사건 우선주의 주주에게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1주당 당기순이익 중 10,000분의 1을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배당함.
 - ② 당해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의 결의를 통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

A주식회사의 2022년도 재무제표상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였으나 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이익배당에 관해 아무런 기재가 없었고, 2023. 3. 3. 열린 A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잉여금처분계산서가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승인의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2023. 4. 1. 현재 丁이 A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우선주에 대해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라. (10점)

부동산등기법

【문 1】

X토지에 관하여 甲으로부터 乙 명의로 2020.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10. 15. 접수 제12357호).

2022. 3. 甲이 乙을 상대로 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1.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2. 2023. 2. 10. 위 소송에서 甲의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변론종결일은 2023. 1. 10.),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전인 2023. 4. 1.에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발생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등기신청절차를 설명하시오(각 설문은 상호 관련성 없음). (30점)
 - ① 甲이 사망한 경우
 - ②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③ 乙이 사망하여 곧바로 乙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문 2】

1. 甲소유 X토지에 대하여 乙을 가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丙을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이후 乙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으로 丙의 가압류 등기가 직권말소 되었는데, 乙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이 위조된 서류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임이 밝혀져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그 후 다시 甲에서 丁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가. 丙의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상태에서 가압류의 효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 나. 丙의 가압류등기를 회복하고자 할 때 등기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2.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된 경우의 촉탁등기 중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의 말소촉탁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